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441호

2026년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원구 청년기업인을 발굴하여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노원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신 청 제 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별표1)
-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5층 청년정책과

※ 방문 시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인증 절차

청년창업기업 인증 신청	서면조사 현장조사	검토·확인	청년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신청기업→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신청기업

4 제출서류

- ❍ 청년 창업기업 인증 신청서 1부[서식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1부
-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5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취소

- ❍ 인증유효기간 : 3년
 - ※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 인정
- ❍ 인증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6 인증기업 인센티브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 노원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년 창업지원 시설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
- ❍ 청년 창업기업 인증 기업 제품 구매 촉진 지원
- ❍ 노원구 각종 행사 및 축제시 참여 우대
- ❍ 청년 창업기업의 홍보활동 지원
- ❍ 창업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법률, 경영, 세무, 노무 등)

※ 추후 인센티브 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노원구 청년정책과 (☎ 02-2116-7112)

별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표준 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서식1]

[]인증
청년 창업기업 []재인증 신청서
[]변경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성별 :)		형태 [] 법인 [] 개인
	주소 (전화번호:)		
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의 []인증 []재인증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년 창업기업 인증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 · 현장조사	→	검토 · 확인	→	청년 창업기업 인증서 발급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노원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노원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자격 확인(연령,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
-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 인증 심사 및 관리 안내
- 인증서 발급, 변경 사항 관리 및 사후 관리(인증 취소 확인 등)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실명확인 및 체납 확인 시 필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사업장 및 자택) 기업대표 경력사항, 국세.지방세 납부 현황

■ **노원구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 자격 확인 및 심사가 불가능하여 인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노원구(관련부서) 및 인증 심사.조사 위탁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노원구 청년기업 인증 대상자 선정, 실태 조사 및 인증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기업명, 사업장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을 위한 서면·현장조사 안내가 지연되거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노원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인)

노원구청장 귀하